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651
------------	------

2025. 4. 23.
주택공간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3. 31. 서울특별시장 제출
- 회부일자: 2025. 4. 2.
-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30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5. 4. 23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 (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)

1. 제안이유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'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'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'미래공간기획관'을 추가하고, 직제 순서에 맞게 각 호를 체계적으로 개편(안 제10조제2항제3호)

나. 위원회 구성 조항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위촉위원 근거 조항 추가 등 어구 수정(안 제8조, 안 제10조)

다. 용어 약칭 추가(안 제6조제3호, 안 제8조제2항, 안 제10조제2항제9호, 안 제15조)

라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(안 제2조, 안 제11조의2, 안 제12조, 안 제14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윤은정 수석전문위원)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 “서울비엔날레”) 업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(주택실→미래공간기획관)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요건을 정비하고, 운영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임.

가. 운영위원회 관련(안 제10조)

: 운영위원회 위원에 ‘미래공간기획관’ 추가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,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7. <u>서울시의원</u> 2명</p> <p>8. <u>출연기관의 대표이사</u></p>	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운영위원회 위원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미래공간기획관</u></p> <p>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7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 ----</p> <p>8. <u>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</u>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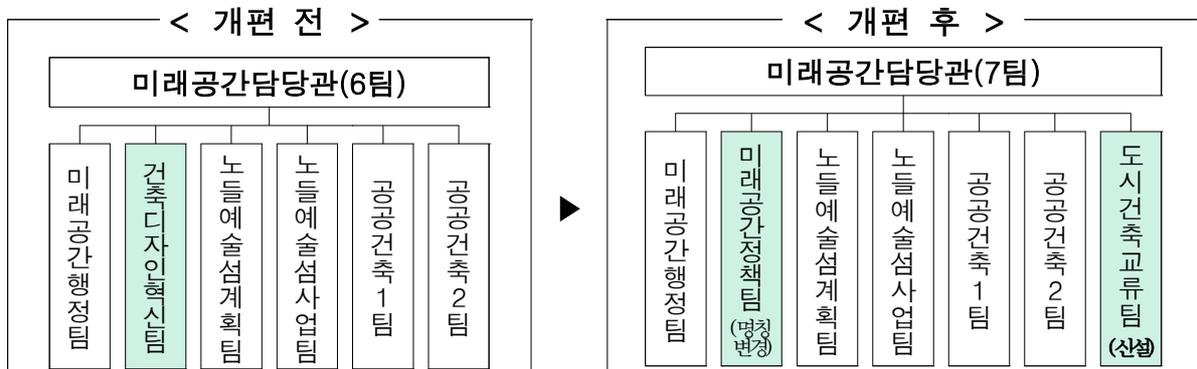
<p>9. <u>서울의 건축, 도시,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</u>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⑦ <u>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	<p>9. <u>시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, 위원장이 회의에 -----</u> ----- <u>모두 회의에 -----</u> <u>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.</u>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<u>정할</u> ----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서울시는 ‘17년¹⁾부터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격년 단위로 서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며, 올해는 제5회 서울비엔날레²⁾를 개최할 예정임.

- 서울비엔날레는 ‘17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, ‘21년 7월 그 업무가 주택정책실(현, 주택실)로 이관되었다가, ‘25. 1. 1일자로 미래공간기획관*으로 이관³⁾됨.

* 미래공간기획관은 22년 8월 도시공간개선단과 공공개발기획단이 통합·재편되었음.

- 1) 조례 제정일: 2017. 5. 18.(시행 2017. 5. 18.)
- 2)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: ‘25. 9. 4.(목) ~ ‘25. 10. 31.(금) (58일간)
- 3) 제1회(‘17)·제2회(‘19): 서울디자인재단, 제3회(‘21)·제4회(‘23): 주택실, 제5회(‘25)~: 미래공간기획관
· 미래공간기획관(미래공간담당관) 조직개편 현황(‘25. 1. 1.자)



- **안 제10조제2항**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현 소관부서의 장인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려는 사항임.
- 그 밖에 **안 제10조제4항** 및 **제7항**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,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나. 조직위원회 관련(안 제8조)

: 조직위원회 위원 명칭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조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위원</u> 구성은 시장, 행정1·2부시장, <u>서울 총괄건축가 및 시의원</u>과 그 외 <u>서울의 도시 건축문화와</u>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<u>한다</u>.</p> <p>③ <u>위원장은</u> 시장이 하며, 부위원장은 행정1·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.</p> <p>④ <u>조직위원회</u>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(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,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)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</p> <p>⑤ <u>위촉직 위원</u>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⑥ <u>조직위원회</u>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8조(조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조직위원회의 위원</u>----- <u>서울 총괄건축가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)</u> 및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--- <u>시의</u> ----- ----- <u>구성한다</u>.</p> <p>③ <u>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조직위원회 회의</u>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, <u>위원장이 회의에</u> ----- ----- --- <u>모두 회의에</u> ----- ---- <u>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</u>.</p> <p>⑤ ---- <u>위원의 임기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⑥ <u>조직위원회 회의</u>----- ----- -----.</p>

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⑦ ----- 필요한 -----
----- 정할 -----.

○ 조직위원회는 서울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, 예산의 승인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나, 현재까지 구성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, 역할 등을 재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이라도 그 역할 중 예산의 승인, 출연기관의 승인 등의 사항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해 보임.

〈 서울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비교 〉

구 분	조직위원회	운영위원회
근거	조례 제7조~제8조	조례 제9조~제10조
구성일	미구성	'17. 5. 18.
역 할	- 사업계획, 예산 등 주요사항 승인	-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실무
	승인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 승인 · 예산 승인 · 운영 업무 수행 출연기관 승인 ·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·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	수행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사항 · 예산수립과 결산 사항 · 총감독 선정 사항 · 관련 업무의 운영 사항
인 원	10명 내외	17명 이내
위촉직 임기	2년(한차례에 한해 연임)	2년(한차례에 한해 연임)
구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 원 장 : 시장 · 부위원장 : 행정1부시장 (3명) 행정2부시장 · 위 원 : 서울총괄건축가 시의원 외부전문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 원 장 :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·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 · 위 원 :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시의원 2명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외부전문가
비 고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위원회 운영 - 인 원: 3명 ~ 5명(위원장 포함) - 위원장: 운영위원장이 지명

다. 기타 사항(안 제2조, 제6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4조 및 제15조)

-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, 약칭 규정, 용어의 정비 등 자구를 수정⁴⁾ 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개최시기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 “서울비엔날레”라 한다)를 2017년부터 <u>격년단</u> 위로 개최한다.	제2조(개최시기) ----- ----- ----- <u>격년 단</u> 위-----.
제6조(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)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 략) 3.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<u>서울시</u> 및 공공기관·민간기업·대학·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·협력 거버넌스 구축 4. (생 략)	제6조(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)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
제12조(출연금 등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단, 출연기관은 <u>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</u> ②·③ (생 략)	제12조(출연금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. <u>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<u>경우</u>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	제14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----- <u>경</u> <u>우 출연기관의 장에게</u> -----

4) 현행 조례는 '20. 3. 26.에 마지막으로 개정한 후 자구 수정 등 용어의 정비가 없었음.

<p>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<u>서울시</u>로 귀속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소속 공무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</u></p> <p><u>로</u> ----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라. 종합의견

- 서울비엔날레는 ‘17년부터 총 5회가 개최되는 동안 소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행사의 성격과 방향, 준비과정 등 업무의 연속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, 서울시는 장기적 비전과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사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또한,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으나 조직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조직위원회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바, 위원회 간 운영 체계를 재편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격년단위”를 “격년 단위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위원 구성”을 “조직위원회의 위원”으로, “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”을 “서울총괄건축가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, “서울의”를 “시의”로, “한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”를 “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”로, “모두”를 “모두 회의에”로, “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”를 “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은 임기를”을 “위원의 임기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조직위원회”를 “조직위원

회 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정하여 운영할”을 “정할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운영위원회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서울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 의회 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서울의”를 “시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”를 “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, 위원장이 회의에”로, “모두”를 “모두 회의에”로, “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”를 “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정하여 운영할”을 “정할”로 한다.

3. 미래공간기획관

8.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

제11조의2제4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출연기관의 장에게”로,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서울시로”를 “시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개최시기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 “서울비엔날레”라 한다)를 2017년부터 <u>격년단위로 개최한다.</u></p>	<p>제2조(개최시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격년 단위-----.</u></p>
<p>제6조(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)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<u>서울시</u> 및 공공기관·민간기업·대학·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·협력 거버넌스 구축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6조(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조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 구성은 시장, 행정1·2부시장,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</u>과 그 외 <u>서울의 도시건축 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시장이</u> 하며, 부위원장은 행정1·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</p>	<p>제8조(조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조직위원회의 위원-----</u> ----- <u>서울총괄건축가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)</u> 및 <u>서울특별시의회의원---</u> <u>시의 ---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---</u> ----- -----</p>

다.

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(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,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)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,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--.

④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 -----

----- 모두
회의에 -----
---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.

⑤ ----- 위원의 임기는 -----

⑥ 조직위원회 회의-----

--.

⑦ ----- 필요한

정할 -----.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운영위원회 위원-----

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미래공간기획관

3. ~ 5. (생략)

7. 서울시의원 2명

8. 출연기관의 대표이사

9. 서울의 건축, 도시,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(생략)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

⑤·⑥ (생략)

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7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-----

8.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

9. 시의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, 위원장이 회의에 -----

모두 회의에 -----
-----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필요한

정할 -----.

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필요한 -----
-----.

제12조(출연금 등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단,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4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.

제12조(출연금 등) ① -----

----- 범
위-----
---.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 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----
-----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
게 -----
----- 소속 공무원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-----

----- 시로 -----
-----.